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 포함 〉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94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 포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7.
3. 회 부 일 : 2025. 1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급수시설·설비의 위생상태 점검과 위생관리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단순히 검사여부, 적합여부 등만 공개하고 있어 급수시설의 실제 수질상태를 알기 어렵고 먹는 물 위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는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시설에서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기관·시기, 검사항목·방법, 검사결과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공개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급수시설에서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 · 시기, 검사항목 · 방법, 검사결과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4(먹는 물 점검 결과 공개의 특례)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먹는 물의 식품위생 점검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시설에서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내용은 검사기관 · 시기, 검사항목 · 방법, 검사결과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에서 유지 · 관리해야 할 위생의 종류로 환기 · 채광 · 조명 · 온도 등의 ‘환경위생’과, 식기 · 식품 ·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학교의 장

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식품위생 항목 중 ‘먹는 물 관리’의 일환으로 먹는 물의 검사 사항과 판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이에 따라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 점검의 종류와 시기, 점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²⁾.

< 먹는 물 검사사항 및 판정기준 >

검사사항	판정기준	검사기관
수돗물	탁도, 냄새, 맛 등의 이상이 없을 것	학교, 환경부령이 정한 자
지하수 (음용수)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 초과여부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전문기관
지하수 (생활용수)	1일 양수능력이 30통 이상인 경우 (청소용·조경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은 제외)	
정수기 통과수	- 총대장균군: 검출되지 않을 것/100ml - 탁도: 상수도 1NTU이하, 지하수 0.5NTU 이하	
저수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학교
급수관*	기초조사 및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환경부령이 정한 자

* 연면적 5,000㎡ 이상인 학교는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급수관에 대하여 2년 주기로 검사
자료: 교육부

1)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 그러나, 현행 법령은 수질 검사 자체의 기준과 실시 여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명시한 ‘검사 결과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검사항목, 수치, 시기 등)를 공개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학부모나 학생이 실제 수질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학교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개 내용의 구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검사기관·시기, 검사항목·방법, 검사결과 수질기준 적합 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예시로 들고, 이들 사항을 포함한 세부 공개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학부모가 검사 절차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먹는 물 관리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학교는 관리·점검을 보다 면밀히 수행해야 하는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학교가 직접 입력·공개해야 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는 경우, 일부 학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수질검사 결과를 적절히 해석·안내할 역량이 미비하여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특히 소규모학교나 시설 관리 인력이 한정된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정기적인 자료 입력 및 공시를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둘째, 공개된 수질 수치의 해석에 있어 일반 학부모나 학생이 전문적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고, 일시적인 수질 변동이나 허용 농도 미만 검출을 위험 신호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이나 불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현행법령에 따라 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시설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에 따른 적합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정실익이 없음
- 공개범위·내용 등은 관련 지침 개정과 같은 비입법적 정책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검출성분별 상세수치 등 세부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수치해석의 오해, 과도한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 현장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시·도교육청

(부산, 광주, 충북) 신중검토

- 부산: 이미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검사 결과 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수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로 학교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 광주: 세부정보의 과도한 공개로 수치에 대한 오해 및 행정적 부담이 증가함 또한, 공개 양식의 표준화 등은 운영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의 비입법적 정책으로도 구현 가능
- 충북: 학교 구성원의 업무 갈등 예방 위해 학교알리미 입력시스템인 나이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상세수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공포를 확산시킬 위험 있음

(서울) 일부수정

- 서울: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학교 업무 경감 등을 고려하여 검사기관·방법, 검출성분별 상세수치를 제외

문 의 처

02)6788-5184